



##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정관

사단법인 정관(1975. 08. 21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공익법인 정관(1976. 10. 14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 정(1978. 12. 2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 정(1979. 12. 14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 정(1983. 05. 19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 정(1984. 05. 22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 정(1985. 02. 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 정(1988. 05. 04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 정(1991. 05. 2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 정(1996. 11. 01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 정(1999. 11. 14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개 정(2000. 05. 04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개 정(2007. 05. 14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개 정(2010. 07. 2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허가)

개 정(2012. 12. 0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속 및 기타 재료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향상과 산업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라 칭하며 영어명칭은 The Korean Institute of Metals and Materials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자료의 조사, 모집, 연구 및 교환
2. 학술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3. 학술회합의 개최
4.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5. 학술의 국제교류
6. 과학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 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으로 건물임대사업을 행한다

③ 제 2항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지부 및 분회의 설치)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 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2장 회 원

제8조 (회원의 구분) ①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개인회원(명예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2. 단체회원
3. 특별회원

제9조 (명예회원 자격) 이 법인의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0조 (정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정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금속·재료공학 및 기타 관련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그 분야에 다년간 종사한 자

제11조 (학생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학생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금속·재료공학 및 기타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제12조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 이 법인의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본 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단체회원은 비영리단체라야 한다.

제13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은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므로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4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 (회원의 정권 및 제명) ① 이 법인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본 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제3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8인 이내(선출직 및 임명직 포함)
3. 이사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제17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
- ②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④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출방법 및 그 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거관리위원회 등 그 세부사항은 규칙에 정한다.

-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 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③ 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이 임기를 개시할 수 있다.

제19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최고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최고 연장자가 회장에 취임한다.

제2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 및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제4장 총 회

제22조 (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인준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실적의 승인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7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총회 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정회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① 의장 또는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 (평의원회) ① 학회의 제반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 따른다.

## 제5장 이사회

제28조 (이사회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업무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9조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이사회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 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附議)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2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 (재정) ①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3. 자산에서 생긴 과실
- 4. 기타의 수입

제34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본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35조 (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

제37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 (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9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사무국 및 부설기관) 이 법인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연구소 및 기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7장 보 칙

제41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 (정관개정) 이 법인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5조 (공고사항 및 방법)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46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직 위 성 명 | 주 소                | 임 기        |
|---------|--------------------|------------|
| 회 장 김동훈 | 서울 동대문구 목동 120-52  | 1977.12.31 |
| 부회장 김재중 | 서울 서대문구 역촌동 34-66  | 1977.12.31 |
| 이 사 한봉희 | 서울 성북구 정릉동 27-4    | 1977.12.31 |
| 이 사 박용진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5-3   | 1977.12.31 |
| 이 사 김 연 | 서울 성북구 수유동 252-56  | 1977.12.31 |
| 이 사 김수영 | 서울 성북구 행당동 340-81  | 1977.12.31 |
| 이 사 김상주 | 서울 도봉구 미아동 54-57   | 1977.12.31 |
| 이 사 오재현 |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331-34 | 1977.12.31 |
| 이 사 홍중휘 | 서울 성북구 구의동 248-57  | 1977.12.31 |
| 이 사 이재영 |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4-51   | 1977.12.31 |
| 감 사 윤석상 |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47  | 1977.12.31 |
| 감 사 민병선 | 서울 종로구 혜화동 5-8     | 1977.12.31 |

## 부 칙

- ①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75. 8. 21)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70. 10. 14)로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78. 12. 26)로부터 시행하며 이 개정정관 중 평의원에 관한 사항 1980년도~1981년도 임원 선거시부터 적용한다.
- ④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79. 12. 14)로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83. 5. 19)로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84. 5. 22)로부터 시행한다.
- ⑦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85. 2. 16)로부터 시행한다.
- ⑧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88. 5. 4)로부터 시행한다.
- ⑨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91. 5. 28)로부터 시행하며 이 개정정관 제17조 제3항 개정 이전에 3년 이상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에 취임하였던 회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에 재취임할 수 없다.
- ⑩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96. 11. 1)로부터 시행한다.
- ⑪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99. 11. 14)로부터 시행한다.
- ⑫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00. 5. 4)로부터 시행한다.
- ⑬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07. 5. 14)로부터 시행하며 허가년도의 수석부회장은 현행제도를 유지한다.
- ⑭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10. 7. 21)로부터 시행한다.
- ⑮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12 . 12. 4)로부터 시행한다.